

그래서 저는 언론보도가 명백한 오보가 아닌 이상 반론보도청구권을 권장하는 편이고 또 반론보도야말로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침해당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도 신장하면서 법익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조정중재를 통한 반론권과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해 저희 중재위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 김 영 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자)

- 미디어엑세스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언론사에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사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취재·편집·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언론자유였다면 언론사가 거대화·집중화 됨에 따라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권리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국민들이나 언론사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인 '정보청구권'과 소외된 공중들이 매스미디어에 무료로 접근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실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미디어엑세스권'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론권, 정정보도 등의 권리개념 역시 이런 미디어엑세스권의 새로운 형식입니다. 이러한 보도를 실어주는 것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1960년대 이러한 개념을 접한 미국 언론사에서도 미디어엑세스권이 편성권·편집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음부즈맨 프로그램을 모두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잘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권리개념인 미디어엑세스권을 가장 잘 표현한 법제가 방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길게 방송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공적으로 방송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정정·추후·손배도 일종의 미디어엑세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한다고 봐야합니다.

언론사 간의 조정신청이 급증해 저도 걱정됩니다. 중재위원회 측에서 적절한 제도 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한다면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이 계속 접수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 오 복 (경남신문 사회부장)

- 조정중재제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위원회 적극적인 조정 필요

경기도 인구는 경남의 약 4배이고 언론사 수는 방송국의 경우 2배가 넘으며 일간지는 경기도 27개사, 경남은 11개사가 있습니다. 주간지는 경기도 372개사, 경남은 111개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의 경우 1,310개사 대 200개사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청구건수가 경기도의 약 65%라는 것은 첫째, 언론사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고, 둘째, 경남도민들의 의식수준과 실천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